#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7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이용빈・이병훈・김성환

한병도 • 이수진비 • 이탄희

주철현 · 신정훈 · 민형배

장경태 · 윤준병 · 이광재

허종식 · 김홍걸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,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에 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인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,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,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,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

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8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안내할 수 있다"를 "반드시 첨부하고 안내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4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,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거 나 안내하지 아니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8조(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제18조(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) ① (생 략) 공개 및 활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 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 -----반드시 첨부하고 안 다. 내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41조(과태료) ①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. 1. ~ 8. (생 략) 1. ~ 8. (현행과 같음) 8의2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<신 설>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 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 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, 이

	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안내
	하지 아니한 자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